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시정(환수) · 징계 · 통보 · 권고

제 목 △△△(주) 부당 사채(私債) 차용 등 위반행위
소 관 기 관 △△△(주)
조 치 기 관 □□□위원회, △△△(주)
내 용

1. 사건 개요

△△△(주)는 ▲▲컨트리클럽의 ‘201*년 클럽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 **건설과 공사비 지급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201*.*.*. 패소하였고, 위 판결 내용에 따라 판결원리금(미지급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포함)을 시공사 측에 변제하여야 했다.

△△△(주)는 재항고를 검토하였으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판결 원리금’과 ‘201*.*.*까지 계산된 지연이자’ 등 총 1,174,171,000원(잔여공사대금 953,480,000원, 잔여공사대금 지연이자 194,462,000원, 피고부담 소송비용 26,229,000원)을 소송을 위임한 @@합동법무법인(대표변호사 ☆☆☆)에게 송금하였으나, 소송 담당 변호사(☆☆☆)가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는 201*.*.*. ☆☆☆의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횡령한 판결원리금 총 1,174,171,000원 중 201*.*.*.까지 ☆☆☆이 직접 시공사(**건설)측에 상환한 298,175,732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892,056,645원을 ▲▲컨트리클럽의 영업수익금으로 시공사(**건설)에 201*.*.*.자로 우선 변제하였다.

이후 201*.*.*까지 ☆☆☆으로 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176,250,000원을 직접 상환 받았다.

문종진 횡령액 중 미회수 잔액 715,806,645원¹⁾과 소송비용 59,943,806원을 포함한 총 775,750,451원에 대해 2017년 △△△(주) 결산회계감사(&&회계법인) 수감 시 미수금 회계 계정을 확인하고 회계결산감사 종료일 기준으로 미수금 계정을 장부상에 들 수 없다는 회계감사의 의견 확인 후 ☆☆☆으로 부터 201*년 *월 까지 변제가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회계처리 지연을 요청하였으나, 결산회계감사 마감 기일인 201*.*.*까지 ☆☆☆으로 부터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회계결산감사 종료일 까지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주) 직원 3인(BBB, DDD, GGG) 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715,806,645원을 대위변제하고, 201*년 △△△(주) 회계결산 감사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이는 직원 3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변제한 것이 아닌 △△△(주) 법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인 'HHH(19**.*.4.23.생)'으로부터 201*.*.*에 자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채(社債) 차용 과정>

△△△(주) BBB(xx지원팀장), DDD(xx관리 팀장), EEE(xx파트장), GGG(vv 담당자) 이상 4인은 201*.*.*. 평소 알고 있던 골프회원 'HHH'에게 자금 차용 의사를 타진한 후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201*.*.*. BBB 팀장과 GGG 과장은 대표이사 AAA과 전무이사 CCC에게 'HHH회원'으로부터 780,000,000²⁾원을 차용 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고, 대표이사 AAA이 승인하여 2018.2.7. HHH, BBB,

1) (미회수 잔액) 715,806,645원 = 판결 원리금 잔액 892,056,645원 - ☆☆☆ 직접 상환 176,250,000원

2) 사채차입금(780,000,000원) 내역 : 미수금 715,806,645원 / 지급수수료 62,323,806원 / 보통예금(잔액) 1,869,549원

DDD, GGG는 ㉯㉯법무법인(성남 위치)에서 법무법인 사무장 입회하에 “금전소비 대차공정증서(증서 201*제**호)”를 체결, [표 6]와 같이 △△△(주)와 HHH과의 채무관계를 성립시켰다.

○ 채권자 : HHH(****.*.**.)

○ 채무자 : △△△(주) 대표이사 **AAA**

○ 차용액 : 780,000,000원

○ 대리인(위임) : GGG 과장

* 연대보증인(3인) : BBB xx지원팀장, DDD xx관리팀장, GGG 과장

* 당시 대표이사 **AAA**은 동행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유선상으로 공정증서(공증) 이행에 따른 모든 내용에 동의하였다.

[표 6] 채무관련 내역

구분	내 용
공증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사무소 : ㉯㉯법무법인(공증담당변호사 YYY / 담당실장 MMM)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_증서 2018년제**호(201*.*.*.작성) - 채무액 : 780,000,000원(사용기간 201*.*.*~*.*.) - 채무자 : △△△(주) 대표이사 AAA - 연대보증인 : DDD, BBB, GGG(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겸) - 채권자 : HHH(골프회원 00-*027) * 공증담당 변호사는 채무자(대표이사 AAA)로부터 유선으로 대리인 GGG에게 위임하였음을 인정 * 공증 작성 요건은 HHH 회원이 요구 (연대보증인 3인)
사채 차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 차용 : 780,000,000원(201*.*.*.자) / 변제기한 : 2018.11.30. ○ 채무자 : △△△(주) 대표이사 AAA ○ 연대보증인 : DDD, BBB, GGG ○ 채권자 : HHH(골프회원 00-*027)
변제할 금액 (2018.11.3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용기간 : 201*.*.*. ~ 201*.*.*.(297일) ○ *월*일까지 변제할 시(이자 포함) : 799,040,548원 - 차용 원금 780,000,000원

구분	내 용
	- 차용 이자 19,040,548원 (= 780,000,000원 X 3% ÷ 365일 X 297일) ○ 변제할 금액(이자 3% 포함) : 799,040,548원(= 780,000,000원+19,040,548원) * 변제 미완료 시 지연이자 15% 발생

△△△(주) 「정관」 제32조제8호, 「이사회규정」 제8조8호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골프장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서」 제11조에 그 의결사항은 주무부서와 관계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으로 부터 횡령액 반환이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규정 등을 위반하고 회사 채무를 발생시켰으나 ☆☆☆의 약속과 다르게 반환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을 고발할 경우 횡령액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위원회(주주사) 및 이사회에 사후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본 감사 개시 통보를 하자 늦장 보고를 하였다.

2. 관계규정 및 판단기준

△△△(주) 『정관』 제32조제8호, 『이사회규정』 제8조제8호, 『▲▲골프장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서』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은 이사회 의결 및 보고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며, 또한 『윤리지침』 제3조, 제6조, 제12조 등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관계자들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 주주사와의 위탁약정서 등”을 검토 및 준수했어야 한다.

3.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1) AAA의 경우(2018.12.27 퇴사)

위 사람은 201*.*.*.부터 201*.*.*. 실지감사일까지 △△△(주) 대표이사 직위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201*년도 회계결산감사(&&회계법인)에서 지적된 미수금을 처리하고자 ☆☆☆의 횡령액 중 미회수액 715,806,645원을 상계하기 위해 직원 3인이 대위변제한 것처럼 □□□위원회 보고하고 회계결산감사를 종료하였다.

그러나 본 감사를 통해 위와 같이 직원 3인이 대위변제를 한 것이 아니고, 법인명으로 'HHH'으로부터 사채(私債) 78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주) 「정관」 제32조제8호, 「이사회규정」 제8조제8호, 「▲▲골프장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서」 제11조 등에 따라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이사회 보고 및 의결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 긴급하여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여도 사후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책임과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2) CCC의 경우

위 사람은 201*.*.*.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 직위에서 대표이사를 보필하면서 사업운영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대외기관 업무협조 요청, 실행예산편성, 이사회·주주총회 결과보고, 차입한도 내 기채 및 상환 등 전결권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골프장 일반회원 'HHH'에게 법인명의 자금을 차입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추후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채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긴급한 상황으로 단기채무로 인식하여 빠른 시일에 해결될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사로서 책임 있는 직무를 했다고 할 수 없으며 사후 채무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주) 「정관」 제32조제8호, 「이사회규정」 제8조제8호, 「윤리지침」 제3조, 제6조, 제12조, 「▲▲골프장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서」 제11조를 위반하여 공사비용을 이중(二重)으로 지급하게 된 것으로 직무와 이사회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 BBB의 경우

위 사람은 201*.*.*부터 현재까지 xx지원팀 팀장 직위에서 경영계획 수립 및 운영, 주주총회 및 이사회, 재무회계(결산 포함)에 관한 업무 등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 ☆☆☆의 횡령으로 발생한 미수액 715,806,645원을 상계하기 위해 골프장 회원 HHH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하기로 하고, 관련 직원 3인과 모의하고 대표이사 AAA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 HHH에게 법인명의로 사채(私債) 78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 ☹☹법무법인 사업장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개인 자금으로 대위변제한 것처럼 □□□ 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하였다.

4) DDD의 경우

위 사람은 201*.*.*부터 201*.*.*까지 **지원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1*.*.*자로 **관리팀 팀장으로 전보되었으나 ☆☆☆의 횡령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 팀장 직위에 있었고 사채 차용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들과 같이 방안을 모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차입금 마련에 동의하였으며, 201*.*.*. ☹☹법무법인 사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체결하였다.

5) EEE의 경우

위 사람은 201*.*.*.부터 201*.*.*.까지 경영지원팀 구매 및 계약업무를 진행하였고, 201*.*.*.부터 현재까지 xx지원팀 xx파트장 직위인 중간 결재권자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채 차용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들과 같이 방안을 모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차입금 마련을 동의하였으며 이행하였다.

6) GGG의 경우

201*.*.*.부터 현재까지 xx지원팀 과장의 직위에서 구매·회계·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관련 직원들과 같이 사채 차용 방안을 모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차입금 마련을 동의하였으며, 201*.*.*. ☹☹법무법인 사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체결하였다.

4. 관련자들의 주장 및 판단

201*년도 △△△(주) 결산회계감사 종료 직전인 201*.*.*. □□□위원회에 대손상각 처리를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답변 및 횡령 사건 발생 후 10개월 동안 470,000,000원 상환한 이력, ☆☆☆의 채무자(QQ코리아)로부터 받을 지급확인서에 대한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환수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임원(대표이사, 전무이사)과 담당자(BBB, DDD, EEE, GGG)간

논의를 거쳐 HHH 회원으로부터 차용한 대금을 회계결산 마감일에 우선 변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실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201*년 *월 ☆☆☆의 횡령사실을 발견하고도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사유로 언제든지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나 고소·고발 시 횡령액에 대한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손실을 끼치기 보다는 변제 각서와 변제계획 등을 제출 받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하였다.

향후 횡령액 회수에 대해서는 ☆☆☆ 소유 토지에 근저당 설정(201*.*.***)을 하였고, ☆☆☆이 보유한 채권을 압류조치(201*.*.**), ☆☆☆이 대표로 있는 @@ 합동법무법인 계좌 압류(201*.*.***) 등을 취하였고 본 실지감사 착수 전 201*.*.**에 ☆☆☆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사건 관계자들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해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회사 채무를 발생시킨 것은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201*년 *월 채무 발생 이후 본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월 초까지 오랜 기간 횡령액이 환수되지 않은 사실뿐만 아니라 사후보고도 하지 않았다. ☆☆☆에 대한 재산 가압류 및 형사고발 등은 당연히 취해야 되는 행위임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회사채무로 인한 손실과 인계관계는 성립되지 않아 인정 할 수 없다.

이는 △△△(주) 「정관」 제32조제8호, 「이사회 규정」 제8조제8호, 주주사와의 위탁약정서 제11조, 「윤리지침」 제3조, 제6조,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등을 볼 때 위반한 행위이다.

5. 조치할 사항

① △△△(주) 대표이사는 ☆☆☆으로 부터 횡령액 전액을 환수하기 위한 기 조치 (압류, 고소 등)를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횡령액 전액 환수가 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적극적으로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환수)]

상법 제399조 및 민법 제390조, 제750조에 의거 AAA과 CCC, 연대보증인 3명(BBB, DDD, GGG)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감사종결시점까지도 환수액 산출이 불가능함에 따라 최종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음으로 연내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 예정

② △△△(주) 대표이사는 △△△(주) 「정관」, 「이사회규정」 등을 위반한 BBB (xx지원 팀장), DDD(xx관리 팀장), EEE(xx지원팀 파트장), GGG(xx지원팀 과장) 이상 4인을 △△△(주) 「인사규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중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③ □□□위원회 위원장은 △△△(주) (前)대표이사 AAA과 전무이사 CCC는 이사로서 책임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켜 상법 제399조 및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나, 현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 따라 AAA과 CCC의 퇴직금, 성과급 등을 횡령액 환수 때까지 지급을 보류 하시고, CCC에게는 이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 하였으므로 ‘주의’ 처분을 촉구합니다. [통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변상명령

제 목	부당 사채(社債) 차용 및 채권자 특혜에 따른 손실
관계 기관	△△△(주)
소관 기관	△△△(주)
회계 연도	201*년
회계 명	문화예술진흥기금
변상명령대상자	① △△△(주) 前)대표이사 AAA (19**.*.*) ② △△△(주) XX지원팀장 BBB (19**.*.*) ③ △△△(주) XX코스관리팀장 DDD (19**.*.*) ④ △△△(주) XX지원팀 파트장 EEE (19**.*.*) ⑤ △△△(주) XX지원팀 과장 GGG (19**.*.*)
주 문	위 사람들 중 AAA은 26,579,000원을, BBB·DDD·EEE·GGG 이상 4인은 각각 2,941,000원씩 변상할 책임이 있다.
이 유	

1. 사실관계

1) 부당한 회사채 발행으로 불필요한 이자 등 손실 초래

□□□위원회는 소유하고 있는 '▲▲컨트리클럽'의 사업 운영 및 재산관리를 △△△(주)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의 주주는 □□□위원회 위원장이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전무이사, □□□ 사무처장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는 201*년 ▲▲컨트리클럽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건설과 공사비 지급 항소심에서 201*.*. 패소하였고,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판결 원리금 등 1,174,171,000원을 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횡령을 하였다.

이에 ☆☆☆의 횡령액 중 사용하지 않은 298,175,732원을 시공사에 상환하고, 미지급액(횡령액) 892,056,645원을 2017년도 ▲▲컨트리클럽 영업수익금으로 우선 변제(201*.*.*)하여 소송관련 비용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은 횡령액 892,056,645원 중 일부인 176,250,000원을 △△△(주)에 상환 (201*.*.*)하였으나 나머지 미상환액 715,806,645원³⁾과 소송비용 59,943,806원을 포함한 775,750,451원은 상환하지 않는 상황(☆☆☆의 재산압류 등 조치를 취하였고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를 할 경우 횡령액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제를 독촉하는 방안 선택함.)으로 2017년도 회계결산감사 종료일 (201*.*.**.)까지 미수금을 처리하여야 하나 ☆☆☆으로부터 회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주) 직원 3인(BBB, DDD, GGG)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대위변제하고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주) 대표이사 AAA과 직원 4인 (BBB xx지원팀장, DDD xx관리팀장, EEE xx파트장, GGG 계약담당자)이 모의하여 골프장 회원 'HHH'에게서 780,000,000⁴⁾원 사채를 법인명으로 차용한 것이며 사채 차용을 위해 필요한 보증을 직원 3인(BBB 팀장, DDD 팀장, GGG 과장)이

3) (미회수 잔액) 715,806,645원 = 판결 원리금 잔액 892,056,645원 - ☆☆☆ 직접 상환 176,250,000원

4) 사채차입금(780,000,000원) 내역 : 미수금 715,806,645원 / 지급수수료 62,323,806원 / 보통예금(잔액) 1,869,549원

연대보증 하였고, △△△(주) 대표이사가 법인명으로(채무자) 공증까지 하였다.

[표 7] 채무관련 내역

구분	내 용
공증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증사무소 : ⚡⚡법무법인(공증담당변호사 YYY / 담당실장 MMM)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_증서 201*년제**호(201*~**작성) - 채무액 : 780,000,000원(사용기간 201*~**~**) - 채무자 : △ △ △ (주) 대표이사 AAA - 연대보증인 : DDD, BBB, GGG(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겸) - 채권자 : HHH(골프회원 00-*027) * 공증담당 변호사는 채무자(대표 AAA)에게 유선으로 대리인 GGG에게 위임하였음을 인정 * 공증 작성 요건은 HHH 회원이 요구 (연대보증인 3인)
사채 차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채 차용 : 780,000,000원(201*~**자) / 변제기한 : 201*~**. ○ 채무자 : △ △ △ (주) 대표이사 AAA (*연대보증인 : DDD, BBB, GGG) ○ 채권자 : HHH(골프회원 00-*027)
변제할 내역 ① 2018.11.30.까지 ② 변제일 기준 14일 지연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용기간 : 201*~** ~ 201*~**.(297일) ○ 11월30일까지 변제할 시(이자 포함) : 799,040,548원 - 차용 원금 780,000,000원 - 차용 이자 19,040,548원 (= 원금 X 3% ÷ 365일 X 297일) * 변제할 금액 : 799,040,548원(원금 + 이자)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연기간 : 201*~**.(14일) ○ 11월30일 이후 14일 지연이자 : 4,487,671원 - 지연 이자 4,487,671원 (= 원금 X 15% ÷ 365일 X 14일) * 이자총액 : 23,528,220원 (= 이자 3% 19,040,548 + 지연이자 15% 4,487,671원)

2) 채권자에게 부당 특혜 부여에 따른 영업 손실

채권자인 HHH은 골프장 회원으로 201*.*.*. 채무관계 성립 후 ‘본인을 일반회원에서 특별회원으로 대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주) 대표이사 AAA과 경영지원팀장 BBB은 △△△(주) 규정 「대우요금 시행세칙」의 특별회원 기타 “사장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적용하여 HHH을 특별회원으로 대우하여 골프장 이용료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채무관계 발생에 따른 과도한 특혜이며 특별회원 대우를 이행 한다는 내부결재도 없이 HHH과 그 지인(비회원)들을 특별회원으로 우대를 해주었다.

▲▲컨트리클럽 이용 시 비회원이 골프라운딩을 할 경우 [표 8]과 같이 비회원 요금을 적용해야 함에도 [표 9]과 같이 HHH의 지인(비회원) 102명에게 HHH과 동일한 혜택을 부당하게 부여하여 201*.*.*체결일)부터 실시 감사 시점인 201*.*.*까지 [표 9, 표 10]과 같이 14,815,000원의 영업 손실을 발생시켰다.

[표 8] 정·비회원 이용요금(그린피) 단가 현황

구분	평일(주중)	정회원과 비회원 차액	토요일	일·공휴일	정회원과 비회원 차액
정회원	65,000원	125,000원	70,000원	70,000원	토요일 : 170,000원
비회원	190,000원		240,000원	230,000원	일·공휴일 : 160,000원

[표 9] HHH 지인(비회원) 특혜로 인한 영업 손실액

구분	이용회수	동반자(비회원)	손실액	비고
HHH 동반 비회원	10회	27명	4,035,000원	동반 라운딩
HHH 예약 비회원	20회	75명	10,780,000원	
합계	30회	102명	14,815,000원	

[표 10] HHH 회원 관련 비회원 라운딩 내역

(단위 : 원)

일자	①명수	②1인당 그린피	③1인당 그린피 차액	차액 합계 ④(=①×③)	일자	①명수	②1인당 그린피	③1인당 그린피 차액	차액 합계 ④(=①×③)
03-18(일)	3	70,000	160,000	480,000	07-04(수)	4	65,000	125,000	500,000
03-25(일)	3	70,000	160,000	480,000	07-13(금)	4	65,000	125,000	500,000
03-26(월)	3	65,000	125,000	375,000	07-17(화)	3	65,000	125,000	375,000
계	9	205,000	445,000	1,335,000	07-18(수)	4	65,000	125,000	500,000
04-02(월)	3	65,000	125,000	375,000	07-22(일)	3	70,000	160,000	480,000
04-07(토)	3	70,000	170,000	510,000	계	18	330,000	660,000	2,355,000
04-15(일)	3	70,000	160,000	480,000	08-12(일)	4	70,000	160,000	640,000
04-26(목)	3	65,000	125,000	375,000	08-18(토)	4	70,000	170,000	680,000
계	12	270,000	580,000	1,740,000	08-19(일)	3	70,000	160,000	480,000
05-01(화)	1	70,000	120,000	120,000	계	11	210,000	490,000	1,800,000
05-08(화)	1	65,000	125,000	125,000	09-01(토)	4	70,000	170,000	680,000
05-20(일)	4	70,000	160,000	640,000	09-07(금)	4	65,000	125,000	500,000
05-27(일)	3	70,000	160,000	480,000	09-12(수)	4	65,000	125,000	500,000
05-31(목)	4	65,000	125,000	500,000	09-18(화)	4	65,000	125,000	500,000
계	13	340,000	690,000	1,865,000	09-26(공)	4	70,000	160,000	640,000
06-13(공)	4	70,000	160,000	640,000	09-30(일)	3	70,000	160,000	480,000
06-18(월)	4	65,000	125,000	500,000	계	23	405,000	865,000	3,300,000
06-24(일)	4	70,000	160,000	640,000	10-14(일)	4	70,000	160,000	640,000
계	12	205,000	445,000	1,780,000	계	4	70,000	160,000	640,000
-	-	-	-	-	합계	102	2,035,000	4,335,000	14,815,000

2. 변상책임 유·무 검토 및 판단 기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 요건에 따라 △△△(주)의 대표이사 및 회계업무를 수행한 관계자 4명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주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사건 관계자들 중 AAA은 △△△(주) 대표이사로서, BBB은 xx지원팀 총괄로서, DDD은 전 xx지원팀 총괄자로서, EEE은 xx지원팀 파트장으로서, GGG는 계약 등 담당자로서 위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사채(私債) 차용 등으로 기금의 손실을 초래한 사람들로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

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주) 「정관」 제32조제8호, 「이사회규정」 제8조제8호, 「▲▲골프장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서」 제11조 등에 의하면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회사 채무를 발생시켰으며, 또한 이를 개인 자금으로 대위변제한 것처럼 □□□위원회(주주사)에 허위 보고를 하였다.

한편, 이사회 규정 제15조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서면이사회 회의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는 간사가 영구 보존하며, 그 의결사항은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장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서」 제11조에 의하면 △△△(주)는 기타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은 필요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위탁계정의 매월 수지 종합보고 또한 익월 **일까지 보고해야 함에도 사후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① AAA의 경우

위 사람은 201*.*.*부터 201*.*.*. 실시감사일까지 △△△(주) 대표이사 직위에서 기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그런데 AAA은 ▲▲골프장 결산

회계감사 미수금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원 4인(BBB, DDD, EEE, GGG)이 보고한 골프회원 HHH으로부터 법인명의로 사채(私債) 780,000,000원을 차용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이는 △△△(주) 「정관」 제32조제8호, 「이사회규정」 제8조제8호, 「▲▲골프장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서」 제11조 등에 따라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은 이사회 의결사항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사회 의결 없이 회사 채무를 발생시켰으며 사채 차용 후에라도 사후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비용을 이중(二重)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대표이사로서 책임이 중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② BBB, DDD, EEE, GGG의 경우

BBB은 201*.*.1.부터 실지감사일까지 xx지원팀 팀장 직위에서, DDD은 201*.*.*.부터 201*.*.*.까지 xx지원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201*.*.*.자로 xx관리팀 팀장으로 전보되었으나 ☆☆☆ 공사대금 횡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던 전(前) xx지원팀장으로, EEE은 201*.*.*.부터 xx지원팀에서 구매·회계·계약 업무를 201*.*.*.까지 담당하고 201*.*.*.부터 실지감사일까지 xx지원팀 파트장으로, GGG는 201*.*.*.부터 실지감사일까지 경영지원팀에서 구매·회계·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 위 4인은 201*년 회계결산감사에서 지적된 미수금 715,806,645원을 처리하기 어렵게 되자 골프장 회원 HHH으로부터 사채를 차용하기로 사전 모의하고 대표이사 AAA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채무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를 직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대위변제한 것처럼 □□□위원회에 허위 보고를 하였다.

201*.*.*. 골프장 회원인 HHH에게 직원 EEE, BBB, DDD, GGG 4인은 긴급한 대금 차용을 문의하였으며, HHH으로 부터 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201*.*.*. BBB과 GGG 2인은 대표이사 AAA에게 HHH 회원이 780,000,000원 자금을 차용해주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하였고, 직원 3인(BBB, DDD, GGG)이 HHH과 만나 자금차입을 위한 법인명의의 공증과 위 3인의 연대보증 요구를 당일 대표이사 AAA에게 바로 보고하고 HHH의 요구대로 할 것을 지시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고 및 승인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두보고를 통해 처리하였다.

201*.*.*.에 △△△(주) 직원 BBB, DDD, GGG 이상 3명과 채권자 HHH은 ☞☞법무법인 사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체결하였다. ☞☞법무법인은 채무자가 △△△(주) 법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석하지 않은 대표이사 AAA에게 직접 유선통화 후 △△△(주) 대표이사 AAA이 HHH의 자금차입을 요구한 사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관계서류를 확인하였으며, △△△(주) 직원 3명이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한 증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법령(규정) 위반과 손해 발생 여부

위 사람들은 △△△(주) 「정관」 제32조 제8호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 및 「이사회규정」 제8조제8호 규정, 「▲▲골프장 사업운영 및 재산관리 위탁약정서」 제11조를 등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780,000,000원(차입금) 손해를 초래하였고, 차입금(원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23,528,220원(이자 3%, 지연이자 15%), 채권자 HHH(비회원 102명 포함)에게 규정에 없는 특별대우를 하여 발생한 영업손실액 14,815,000원을 합한 38,343,220원을 추가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는 위 사람들과 주고받은 질문서, 문답서, 확인서 등 기타 관련 증거서류 등으로 증명되었다.

3. 변상 책임액

위 사람들은 중대한 과실로 주주사인 □□□위원회에 채무를 발생시켰으며 채무원금 780,000,000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등 38,343,220원을 합한 총 818,343,220원의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前)대표이사 AAA과 전무이사 CCC는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여 손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하는 등 상법 제399조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390조의 의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다만, △△△(주)가 공사대금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 차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송비용을 횡령한 ☆☆☆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비롯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류 조치 등이 이루어진 점, 차입금(사채)을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결에 따른 채무변제 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 ☆☆☆이 횡령한 금원의 반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현재 검찰에 고발되어 횡령액 전부 상환을 약속)으로 반환 여부에 따라 (전)대표이사과 전무이사,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그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는 차입금 780,000,000원을 201*년 *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환수하시고 그 결과를 예술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향후 ☆☆☆의 횡령액 반환 여부에 따른 위사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조치는 별건으로 추진한다.

위와 같이 법인명의의 사채(私債)를 차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38,343,220원에 대해서는 위 사람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사채(私債)를 차용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함께 처리한 점과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여 AAA(前)대표이사의 책임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손실비율 50%, 그 외 직원 4인은 같은 목적을 위해 합의된 행위를 하였으므로 각자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50%를 1/N로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보아 책임 비율은 사안별로 1/N로 정한다. HHH(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는 AAA이 최종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책임비율을 100%로 정한다.

AAA은 부당한 사채 차용으로 발생한 손실액 11,764,110원(23,528,220원의 50%)과 채권자에 대한 부당 특혜에 따른 손실액 14,815,000원(100%)를 합한 26,579,110원을,

BBB, DDD, EEE, GGG 이상 4명은 부당한 사채 차용으로 발생한 손실액인 2,941,027.5원(11,764,110의 1/4)씩을 [표 11]과 같이 각각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회계직원책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표 11] 변상관계자 변상액 내역

(단위 : 원)

대상자	사건 당시 직위	변상사유 및 변상명령액			비고
		부당채무 손해액	부당특혜 손실액	합계	
AAA	前)대표이사	11,764,000	14,815,000	26,579,000	
BBB	XX지원팀 팀장	2,941,000	0	2,941,000	
DDD	XX관리팀 팀장	2,941,000	0	2,941,000	전 XX지원팀 팀장
EEE	XX지원팀 파트장	2,941,000	0	2,941,000	전 구매계약 담당
GGG	XX지원팀 구매회계 담당	2,941,000	0	2,941,000	
5명		23,528,000	14,815,000	38,343,000	※ 백원미만 버림

2019. 3.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임감사

개 선 권 고

제 목	임·직원 골프라운딩 운영 및 관리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주)
조 치 기 관	△△△(주)
내 용	

1. 업무 개요

201*년 □□□위원회의 특별감사에서 △△△(주) 임·직원들의 잦은 골프라운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임·직원 골프라운딩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하였고, 201*년 *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공직기강 점검에서도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이에, △△△(주)는 임·직원 골프라운딩을 관리하기 위하여 내부결재를 통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별도의 임·직원 골프라운딩 기록일지가 아닌 코스관리팀에서 작성하는 일일 업무일지(임·직원 코스이용 칸 작성)로만 관리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작성이 부실하고, 직원의 경우 서면결재 없이 구두보고만으로 허용되고 있다.

2.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

201*년 □□□위원회의 특별감사에서 임원들의 잦은 골프 라운딩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임·직원의 골프라운딩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하였으며, 조치할

사항으로 근무시간 중 임·직원의 골프라운딩을 금지하되 업무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와 시설 및 서비스 점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골프라운딩 횟수 마련, 골프라운딩 일지 비치·기록, 차상급자에게 보고·결재 후 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이후, 201*년 *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공직기강 점검에서도 ‘임원의 골프라운딩 운영수칙’은 마련되었으나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가 불명확하며 임원의 라운딩은 가급적 주 2회 이내로 제한(단, 회사운영 및 영업을 위한 라운딩은 제외)을 원칙으로 하고, 코스 이용 현황을 비치·기록, 임직원의 골프라운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라운딩일지 작성 및 상급자 보고(당시 감사결과 상급자에 보고 없이 라운딩을 함.) 등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치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골프라운딩 현황을 감사한 결과, 임·직원들의 골프라운딩 관리를 위하여 ‘9홀 라운딩 협조 요청’(201*.*.*) 및 ‘9홀 라운드 운영수칙’(201*.*월) 등 내부결재[표 13]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나, 임직원 골프라운딩 기록일지 작성이 부실하며 명확한 사유 등 기록이 없고, 사전 상급자(직원의 경우 팀장)에게 단순 구두 보고만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임·직원들의 골프라운딩을 한 횟수를 201*년 *월부터 *월까지 *개월간 산출해 보면, 임직원 1명이 주 2회 이상의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나오며, 조사대상 기간을 *월부터 *월로 확대할 경우 아래 [표 12]과 같이 20회 이상은 19명이고 임원의 경우 사장은 49회, 전무이사는 58회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부단체 또는 개인 팀이 임·직원의 골프라운딩 동반을 요청할 경우 영업을 일환으로 허용하고,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복지차원과 골프장 내방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직무교육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이 또한

업무와의 연관성이 미흡하고 근무 시간 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 12] △△△(주) 임·직원 라운딩 횟수(20회 이상 기준)

구분	직위	성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중순	계
1	전*	CCC	2회	4회	12회	11회	10회	8회	8회	3회	-	-	58회
2	사*	AAA	3회	1회	3회	5회	7회	7회	3회	5회	12회	3회	49회
3	노조**	SSS	2회	-	2회	3회	6회	13회	10회	5회	4회	1회	46회
4	부장	JJJ	2회	3회	4회	5회	9회	6회	7회	6회	-	-	42회
5	주임	FFF	-	-	3회	4회	5회	12회	13회	5회	-	-	42회
6	**파트장	EEE	1회	1회	3회	4회	7회	12회	3회	5회	-	-	36회
7	**관리 파트장	LLL	-	-	2회	4회	9회	7회	6회	3회	-	-	31회
8	주임	111	-	-	5회	4회	4회	6회	2회	5회	-	-	26회
9	**지원 팀장	BBB	2회	2회	-	3회	6회	7회	1회	2회	1회	-	24회
10	사원	222	-	-	6회	5회	4회	1회	4회	4회	-	-	24회
11	과장	GGG	-	-	-	2회	3회	10회	3회	6회	-	-	24회
12	**팀장	333	2회	1회	3회	5회	3회	2회	4회	3회	-	-	23회
13	주임	444	-	1회	1회	3회	4회	8회	2회	2회	-	-	21회
14	대리	555	-	-	1회	3회	5회	7회	3회	2회	-	-	21회
15	대리	666	-	-	5회	3회	2회	2회	5회	4회	-	-	21회
16	과장	777	-	-	2회	1회	3회	9회	2회	4회	-	-	21회
17	**실장	888	-	-	-	2회	8회	7회	3회	1회	-	-	21회
18	**팀장	999	2회	1회	1회	2회	4회	6회	4회	-	-	-	20회
19	주임	123	-	-	4회	1회	-	3회	4회	8회	-	-	20회
계		19명	16회	14회	57회	70회	99회	133회	87회	73회	17회	4회	570회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

임·직원의 골프라운딩은 시설 및 서비스 점검, 회원(내방객)들과의 업무적인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골프라운딩이

가능한 경우 및 횟수 등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임·직원 골프라운딩 기록일지가 아닌 코스관리팀에서 작성하는 일일 ‘업무일지’에 라운딩을 한 임·직원 명단만 작성하고 있으며 발생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록도 없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의 골프라운딩 운영수칙’에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년 *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공직기강 점검에서 지적된 것 같이 여전히 사전 보고·결재 문서 없이 시행하고 있다.

임·직원의 골프라운딩은 골프장 운영의 필요성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며 임·직원들의 잦은 골프 행위로 인해 다른 현장 직원들과는 상대적 위화감 조성과 직원의 사기 저하 등 여지가 있고 영업차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중 골프라운딩을 자제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엄격한 복무자세도 요구된다.

이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업무의 당위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내부지침(규칙)에 의거해 이행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표 13] 관련문서(임·직원 라운딩 관련 운영수칙)

코스관리팀-7(201***)	코스관리팀(201**)
1. 대상 : 직원, 도우미, 연습생(마샬), 용역회사	1. 대상 : 임직원, 도우미, 연습생(마샬), 용역회사
2. 운영시간 : 티오프 종료 후 경기진행 코스관리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2. 운영시간 : 티오프 종료 후 경기진행 및 코스관리 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함.

코스관리팀-7(201***)	코스관리팀(201**)
3. 각팀 부서장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합니다.	3. 운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 플레이는 1일에 5팀을 초과하지 않는다. ○ 1일 5팀에서 각 1팀, 도우미 2팀 이내로 한다. ○ 조출, 대기 등으로 근무가 종료된 종사원을 우선으로 팀을 배정한다. ○ 연습생(마샬)은 횡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부서장은 대내외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시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다. ○ 월요 휴장 시 플레이는 18홀 이상 금지한다.
4. 3인 이상 플레이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원볼 플레이를 원칙으로 합니다.	
6. 페이웨이 디보트, 그린 볼마크, 벙커정리를 철저히 합니다.	
7. 파3홀에서는 인조 티 타석을 이용합니다.	
8. 월요 휴장 시 18홀 이상은 금지합니다.	4.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레이 시 전동카트로 운영하고 수동카트는 필요시 사용 가능하다. ○ 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다. (도우미는 캐디마스타, 용역회사 직원은 경영지원 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 골프 플레이는 당일 14:00까지 경기팀 담당자에게 명단을 제출한다. ○ 신청자 명단을 취합 후 담당자는 코스관리팀에 통보하여 진행 및 코스관리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코스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위 사항 위반 시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3개월간 플레이 금지	

4. 조치할 사항

△△△(주)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골프라운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횡수, 라운딩 사유 등) 및 라운딩일지를 비치·기록, 상급자 보고·결재(최소 전무이사 전결) 등이 반영된 임·직원의 골프라운딩 관련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행정상 개선)